

등록번호	건설계획처-3911
결재일자	2016. 10. 07.
공개구분	공개

건설계획부장	건설계획처장	건설본부장	부이사장
협조자	시설개량처장 시설본부장		

특정공법 심의 운영방안



건설본부 건설계획처

I 배 경

- [현행]** 특허, 신기술 등 특정공법은 설계 중 단일공법 결정 후 소위원회에서 채택, 불채택 만 결정
- [개선]** 우수공법 4개 선정(4개 미만시 있는 수만큼)하여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등 “특정공법 선정 세부시행방안” 마련 공정성 확보

□ 개 요

- 최근 정부의 각종 비리 및 부패척결에 대한 일환으로 건설공사 특정공법 선정관련 제도개선 추진

[특정공법의 정의]

- 인증신기술 및 미인증 신기술을 총칭하며 일반적인 공법이 아닌 경우
 - **인증 신기술** : 관계 중앙행정기관(국토부, 환경부, 산자부 등)의 장이 인증한 신기술
 - **미인증 신기술** : 인증 신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허, 실용신안 등을 받은 공법(신자재 포함)으로 건설 및 유지관리시 원가절감, 품질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(신형식 교량 등)

□ 관련 근거

- 국토부 훈령 『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, '14.12』

제4조 (위원회의 심의 등)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1.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, 시공, 계약방법,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

- * 특정공법 심의관련 세부 운영절차에 대한 관련법령이나 규정 없음
- 공단 『기술자문위원회운영지침』 제16조 및 『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』 제13조에 신기술 및 특정공법 선정시 기술심의 받도록 규정
- *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및 내부직원(50% 이상)으로 소위원회 구성 의결

II 심의위원회 운영방안

□ 심의대상

- 철도건설사업 및 시설개량·유지보수대상공사 등에 적용되는 모든 특정공법
 - *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, 유지보수공사에 필요한 특정공법 (제품 등)은 제외 가능
- 적용분야
 - 빔, 거더, 합성형 라멘교 등 교량공법, 설계변경 (단순 공법변경 제외)
 - * 심의를 통해 선정된 특정공법 변경 시 반드시 재심의 실시
 - 기타 특혜 우려가 있는 설계적용 공법, 자재구매 등

□ 심의기준

- (심의시기) 노선별(또는 공구별) 설계 적용 시 또는 설계변경 시
- (심의위원) 심의대상에 따라 5~20인으로 구성 (외부위원 과반수)
- (심의내용) 특정공법 설계반영 및 현장적용 등의 적정성
- 의결방법 : 특정공법(4개안 이내) 중 과반수 득표 시 1개안 선정
 - * 적용공법 비교 효율성, 타기관(도로공사, 국토부) 사례 준용 4개 안 상정
 - 과반수 미달 시 최상위 2개안 중 재의결 후 과반수 득표한 공법 선정

□ 심의방법

-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 간 토론이 필수이므로 소집심의 시행
 - * 특정공법 심의 세부 운영절차에 대한 관련법령이나 규정 없어 국토부 산하 지방청은 특정공법 심의운영규정 제정 운영 중이며 도로공사는 상기 준용 방침으로 시행 중

□ 소위원회 구성 및 공개

○ 심의위원회

- 위 원 장 : 소관 본부장(부재시 소관 처장)
- 부위원장 : 사업 부서장(처장)
- 간 사 : 담당 부장(지역본부는 해당분야의 총괄부장)
- 위 원 : 5~20명 내외(외부위원은 50% 이상 참여로 객관성 확보)

○ 내·외부 소위원회 후보자 Pool 구성

- (내부) 2급이상 해당 기술직 전문가
- * 위원부족 시 3급 이상의 기술사 자격자 또는 공단 입사 후 15년 이상의 3급 해당분야 기술직 전문가 포함 가능
- (외부)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
- * 특수분야 등 심의대상에 따라 기술자문위원이 아닌 자 일시위촉 가능

○ 심의주관 부서 : 사업부서(본사 및 지역본부)

○ 위원 Pool 구성 후 감사실 입회하에 주사위로 추천

-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개최 전까지 보안 유지 원칙

* 위원회 개최 및 참석요청 문서 비공개 설정

- 심의자료는 사전배부(최소 3일 이상) 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되 소위원회 구성위원 간 명단은 비밀유지

□ 위원 제척·기피·회피

○ 위원 및 업체에 제척대상 해당여부 파악

- 『기술자문위원회운영지침』 제7조(소위원회의 개최 및 위원의 제척·회피·기피·신고)에 의함

○ 청렴서약서,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, 업체 접촉여부 확인서 등은 회의 개최 당일 징구

Ⅲ 심의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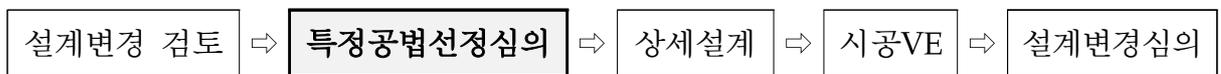
□ 심의시기

○ 설계적용



※ 설계특성을 고려 설계VE 및 특정공법 선정심의는 탄력운영 가능

○ 설계변경



※ 특정공법 선정 심의시 현장설계변경 심의 생략 가능(단 특정공법을 포함한 복수의 변경내용이 포함된 경우제외, VE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)

* [붙임1] 실시설계시 특정공법 설계심사 절차 세부내용 참조

□ 심의절차

○ 개최조건 : 재적위원 2/3 이상 출석

○ 심의안건 설명

- 사업부서에서 특정공법 적용사유 등을 설명
- 각 공법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은 설계는 해당 설계사, 공사는 해당 시공사가 설명하고 특정공법 업체는 참석 및 설명 불가

○ 특정공법 선정 의결절차

- 비교검토가 가능한 경우

1차	위원간 상호 토의 후 과반수 추천 공법이 있을 경우 추천 공법 선정
2차	1차 심의결과 과반수이상 추천 공법이 없을 경우, 추천수가 많은 2개 공법 중에서 과반수 추천한 공법을 선정

- (비교검토가 불가능한 경우) 유사 공법이 없는 경우는 해당 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가부를 의결(과반수 찬성)하고,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
- (심의를 통해 선정된 특정공법 변경 시) 변경사유의 적정성 가부 의결(과반수 찬성) 후 특정공법 선정 의결절차 진행

□ 결과공개 및 Debriefing

- 업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업체 분만 심의의결서, 위원별 추천 사유서 공개
 - 이의제기는 심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
 - 요청 후 5일 이내 Debriefing 실시

□ 비리 등에 의한 제재기준

- 특정공법 심의와 관련된 부정·비리행위 적발 시 업체 및 위원 제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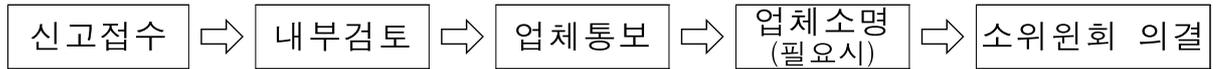
업체	당해 공법 및 해당업체 공법추천 정지 (1년~3년)
위원	즉시 해촉 및 영구 배제, 필요시 검찰고발 등 조치

- 제재방법 : 위반사항과 연관된 위원회(해당 소위원회)에서 의결
 - 심의종료 후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 중 참석이 어려운 경우 동일분야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보완 임명

□ 비리행위 신고 시 처리절차

- 신고대상 : 특정공법 심의와 관련된 부정·비리 행위
- 신고접수 : 감사실(방문, 서신, 온라인(e-mail), 팩스 등)
- 의결기준 :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(동수일 경우 위원장 결정)

- 심의 시 위반내용과 관련된 위원은 배제



- 부정·비리신고에 대한 내부검토 후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게 소명 기회(1회, 5일 이내)를 부여한 후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

* 익명 및 허위신고 피해방지를 위해 증빙서류 미비 등 신고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보완요구 및 반려조치

- 필요 시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 조사의뢰

○ 제재사항은 심의부서에서 관리 (심의 요청 전 제재업체 사전 통보)

* 감사실 신고접수만 담당, 사업부서는 내부검토, 업체통보, 위원회 개최

□ 기타사항

○ 특정공법 해당 공사금액 1억원 미만(재료비 포함)은 심의대상에서 제외

*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“전문공사로서 추정 가격 1억원 이하”는 수의계약 가능 (국토부 산하 지방청 기준 준용)

○ 타 발주청과 비리감점 부과 및 업체 제재사항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 유지 협의

□ 향후계획

○ 방침으로 우선 시행하고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개정(11월)

붙임 : 1. 특정공법 심의 절차

2. 비리 등에 의한 제재기준

3. 제재사항 심의의결서

4. 제재사항에 대한 심의의견서

5. 청렴서약서(위원용)

6. 청렴서약서(업체용)
7.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
8. 심의위원 기피·제척·회피 신청서
9. 업체 접촉여부 확인서(위원용)
10. 심의위원 접촉 신고서
11. 특정공법 추천사유서
12. 회의록(양식)

첨 부 : 특정공법 심의자료(양식)